제9조(추진절차)

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1단계 : 사전준비

- 정확한 작업(공정)의 분류가 중요, 작업(공정)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(공정)들을 정의한다.
-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.
- 사업주, 위험성평가 담당자,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.

② 2단계 : 유해.위험요인 파악

- 가장 중요한 단계로, 작업공정(단위작업)별 유해.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. 베테랑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.

③ 3단계 : 위험성 결정

-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,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.
- “5x4”, “3x3”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.

<표 4>가능성(빈도)기준(평가척도:빈도(5)×강도(4))

빈도	가능성	내 용
1	매우 낮음	<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> 방호울, 방호 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위험 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
2	낮음	<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> 방호울,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,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위험 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, 안전 수칙 및 작업표준(서)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,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
3	보통	<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> 방호울,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,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 영역 접근,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, 안전 수칙, 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
4	높음	<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> 방호울, 방호 덮개,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, 해체되어 있으며, 안전 수칙, 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
5	매우 높음	<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>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, 표시, 표지가 없으며, 안전 수칙, 작업표준 등도 없음

<표 5> 중대성(강도) 기준 (평가척도 : 빈도(5)×강도(4))

구 분	중대성	점수	기 준
최대 (4)	사망(장애 발생)	4	• ○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또는 질병(업무 복귀 불가능), 장애가 남는 부상 또는 질병 • ○ 소음 : 90dB 이상 • ○ 근골격계 : 매우 힘듦
대 (3)	휴업 필요(부상/질병)	3	• ○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(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(완치 가능)) • ○ 소음 : 90dB미만 ~ 85Db • ○ 근골격계 : 힘듦
중 (2)	휴업 불필요	2	• ○ 응급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• ○ 소음 : 85dB미만 ~ 80dB • ○ 근골격계 : 보통
소 (1)	해당없음	1	처치(치료)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(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)